

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

과업지시서

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

2021. 09.

I 과업 개요

- 사업명 :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
- 사업기간 : 2021.10.01 ~ 2022.09.30.까지
- 사업목적
 - 본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품질을 향상
 - 직원과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을 최소화
 -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

II 과업지시 내용

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과 세탁물 위탁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 간 체결된 『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세탁물처리 위탁처리 용역계약』의 과업지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세탁물의 종류

- 세탁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 - 침구류 : 이불, 담요, 시트, 베갯잇 등
 - 의류 : 환자복, 신생아복, 수술복, 겹진가운, 수술가운, 의사가운, 직원 및 간호사 근무복, 의료기사 가운 등
 - 린넨류 : 수술 포, 레퍼, 모자, 수건 등 그 밖의 린넨류
 - 기타 : 커텐, 씌우개 류, 세탁물수거자루, 그물망 등

※ 세탁물품 내역서의 품목으로 하되 규격이 유사한 품목은 묶어 대표 품목으로 계약한다. 단, 계약 외 신규 품목 발생 시 계약된 품목 중에서 규격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. 세탁시설 및 장비

-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폐수배출시설업 인허가자격증, 시설 및 장비 내역서)를 제출한다.
-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 - 연속기(터널 세탁기) 2대 이상 보유
 - 고압보일러 :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
 - 소독시설 : 세탁 전 세탁물 소독 기능으로 오염 작업구역에 설치

- 세탁기 : 섭씨 80°C-100°C 이내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 할 수 있어야 하며, 터널식전자동세탁기가 1회 이상 설치
 - 탈수기 : 원심분리원리로 탈수하는 기능
(단, 세탁기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요하지 아니함.)
 - 건조기 : 섭씨 80°C-120°C 이내의 열량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
(자동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.)
 - 다림시설 : 수증기 및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
(롤러기, 프레스 등)
 - 수선 시설 : 수선이 가능한 기능(재봉틀 등)
- 3)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,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, 세탁 중, 세탁완료, 폐기물 등의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
 -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
 - 세탁 완료된 세탁물의 운반용기
 -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
- 4) 작업장 청결 및 구충 구서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등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.
- 5) 폐수를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6) 세탁물 관련 정확한 업무를 위해 의사소통 가능한 담당자 1명을 지정하도록 한다.

3. 세탁방법

- 1) 수집된 세탁물은 24시간 이내에 세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2) 세탁물의 오염정도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소독 처리 후 세탁작업에 들어간다.
- 3) 오염세탁물은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』 규정에 따라 저온처리, 소독과정, 삶는 과정 등의 공인된 오염처리 규정에 따라 세탁처리 한다.
- 4) 세탁물의 세탁과정에서 탈색이나 손상이 없어야 하며, 모든 무색직물과 유색 직물의 세탁과정이 정확하여야 되며 얼룩과 착색이 없어야 한다.
- 5) 예비세탁, 세탁과정에 있어서 기타세탁물은 미지근한 물과 약품으로 처리하고 혈액(피)이 묻은 세탁물은 찬물로 1회 이상 행굼을 하고 본 세탁과정에 들어간다.
- 6) 세탁물 행굼은 4회 이상하여 잔여 세제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섬유린스 작업을 거쳐 건조과정에 들어간다.
- 7) 세탁 상태가 불량한 세탁물을 재 세탁 조치하여야 한다.
- 8) 환의는 다림질 하여 구김이 없어야 하며 단추 탈부착여부를 파악하여 분리한다.
- 9) 세탁 완료된 모든 품목은 반드시 다림질을 하여 납품하도록 한다.

- 10) 의료진(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가운 등), 신생아의 세탁물은 반드시 타 세탁물과 구별하여 별도 세탁하여야 하며 수거 및 배송에 관한 사항은 병원의 지시에 따른다.

4. 세탁물의 보관 장소

- 1) 세탁업체는 사용 후 기타, 오염(세탁 전)세탁물과 사용 전(세탁 후) 세탁 물의 보관 장소는 완전히 구분하여야 한다.
- 2)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.
- 3)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4) 세탁물처리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2회 이상 소독을 한다.
- 5) 운반카트는 세탁물처리용역업체에서 주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.

5. 세탁물의 운반

- 1) 운반차량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.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같은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.
- 2)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거용과 납품용으로 색깔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납품 시 소독된 카트에 커버를 써운 후 납품한다.
- 3) 세탁운반차량은 본원에서 지정한 하역장에 입고 가능한 자동카트 운송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.
- 4) 세탁물을 정한 장소까지 운반할 때에는 병원기물(자동문, 엘리베이터 등)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며 파손 시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완료된 세탁물은 소독된 카트에 커버를 써운 후 세탁물이 보이지 않도록 적재하여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맞춰 납품한다.

6.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시한

- 1)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세탁물 수거 및 납품은 주 6일(월~토)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집과 납품은 지정된 시간까지 모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세탁물은 지정된 시간 보관된 장소에서 수거한다. 다만,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.
- 정기적인 수거시간 이외에 사용부서의 세탁물량 증가 등 특별요청 시 즉시 수거하여야 함.
-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.
- 계약상대자는 연휴기간 중 세탁물 수거·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격일제로 시행하는 것

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- 모든 세탁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함

7. 세탁물 납품검수

- 1) 수거된 세탁물은 다음날 지정된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,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, 크기별로 분류, 품목별로 묶음 단위를 달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접어서 납품하여야 한다.
- 2) 세탁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납품한다.
 - 환의 : 사이즈 및 상하 구분 분류, 가운 류 등은 사이즈 분류
 - 시트 류 : 색상별, 크기별로 분류하여 물들지 않게 색상 보존
 - 가운 류 : 의사 및 간호사근무복, 직원근무복, 의료기사 가운, 과별로 구분, 색상 보존
 - 소독 포 등 : 방포, 공포, 각 사이즈별, 색상별로 분리 묶음.
 - 수술복 : 사이즈별, 상, 하 분류
 - 각종 타올 : 물들지 않게 색상 보존
 - 세탁 시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물질(비닐, 스폰지, 기구 류 등)이 차 리할 세탁 물에 포함될 경우, 세탁물과 분리, 제외하여야 하며, 별도 포장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3) 세탁한 후 수선을 요하는 품목은 수선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모아 검수, 검사 후, 병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- 4) 세탁한 린넨 류가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재 세탁 납품하여야 하며 재 세탁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.
- 5) 개인가운 분실 시 같은 사양으로 100%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6) 포장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끈으로 하며 물품이 구겨지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묶는다.
- 7) 환의 류는 구김 없이 납품하도록 한다.
- 8) 가운 류는 본원의 사양에 맞게 접거나 옷걸이에 걸어서 구김이 없도록 납품한다.
- 9) 모든 세탁물은 정품, 과손품, 수선품을 구분하여 납품한다.
- 10) 세탁한 물품은 오점과 이물질이 없고 먼지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.

8. 감염방지

- 1) 병원 세탁물 취급으로 인한 감염원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세탁물 수거 및 세탁물 분류 시 : 작업복 및 방수 가운, 모자, 마스크, 장갑 등을 착용
 - 세탁물 수거직원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: 년 1회 이상
 - 세탁시설 설비 관리 및 감염예방교육 실시 : 년 1회 4시간 이상
 - 오염 세탁물은 유색용기(적색 또는 황색) 또는 “오염 세탁물” 표기가 된 용기에 넣어 구분

9. 행정사항

- 1) 대금의 청구 및 지급
 - 매월 말일 기준으로 세탁물 처리량에 따른 세탁 용역 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며 병원은 익월 지정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한다. 단, 계약사항 불이행시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) 비용부담
 -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(인건비, 납품에 필요차량, 운송비, 운반용기, 포장비 등 납품 완료까지 비용)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병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다.
 - 3) 계약 해제 또는 해지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 위탁 처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계약상대자이 병원 세탁물 처리 규정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해당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- 세탁물처리가 미비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회 이상 세탁물 처리 미비가 확인된 경우(총 3회의 세탁물 처리가 미비되어 확인된 경우)

10. 기타사항

- 1)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을 수거, 납품할 경우, 『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』에 따라 병원이 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“세탁물위탁 처리대장”에 기록을 확인, 서명하고, 거래명 세표와 함께 세탁물을 검수, 검사(확인) 받아야 하며, 별지 제 7호 서식의 “세탁물수탁 처리대장”을 기록, 비치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차량이 수집, 납품 장소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, 출입 시 병원의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손상 시 보상하여야 한다.

- 3) 세탁물의 수거, 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일정량 제작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세탁물 업무 및 환자서비스 개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병원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정 기한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- 5) 세탁물 수거 시 환자의 분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6) 연간 추정소요량에 비해 세탁물은 증감할 수 있다.
- 7)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할 수 없다.
- 8) 세탁물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 반영한다.
- 9)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사업 수행 계약기간 내 『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』이 개정될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